

- 성동구 용답동 49-2 일대 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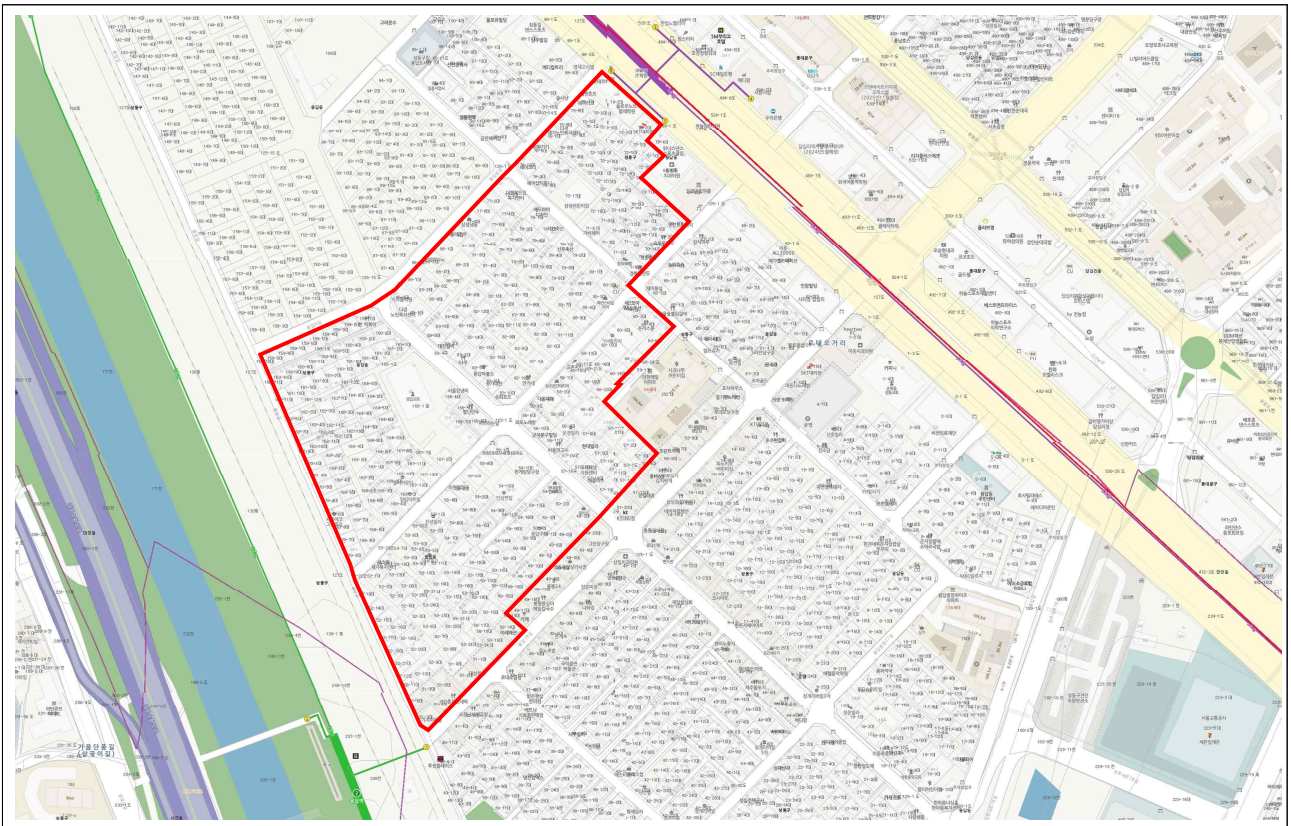
주택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동의서 번호부여 요청 구역 공개

우리 구 용답동 49-2 일대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추진주체에서 동의서 번호부여 요청이 있어 동의양식번호 부여 후 다음과 같이 구역계 등을 공개하며, 추진여부에 대한 의견 제출을 위한 관련 서식((붙임2~4) 찬성동의서, 반대 동의서, 철회 동의서)도 함께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반대 및 철회 의사가 있는 토지등소유자께서는 후보지 추천(區→市)전까지 제출된 반대 및 철회 동의서에 한해 인정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1. 구 역 계 : 용답동 49-2 일대

※ 아래 구역계는 신청인이 제출한 구역계로 후보지 추천시 일부 변경·조정될 수 있음



※ 토지등소유자 수: 541명(소유권 변동 등에 따라 변경 가능)

2. 추진주체(번호부여 신청인)

- 성 명 : 박 상 규
- 연락처 : 010-8111-1629

3. 동의양식 번호 및 부여일자

행정기관부여 동의양식번호	용답동 49-2 일대 제 1 호
번호부여일자	2024. 05. 07.
확인(인)	성동구청 주거정비과장 (인)

4. 공개 장소

- 성동구 홈페이지 > 행정자료실
- 번호부여 신청구역의 동주민센터 게시판 등

5. 기타 안내사항

- 찬성동의서는 검인 발급한 동의서만 사용하여야 하며, 반대동의서 및 동의 철회서는 성동구 홈페이지에 공개된 양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.
- 후보지 공모 신청전에 구역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 동의서는 무효로 하고, 새로운 번호가 부여된 동의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.
- 후보지 신청 전이라도 반대 동의율이 공모 제외요건인 30%를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에서 기 발급된 후보지 신청 동의서는 무효로 하고, 이를 추진주체 및 토지등소유자에게 안내할 예정입니다.
- ‘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신청서’가 접수되면 해당 사실을 ‘성동구 홈페이지 > 행정자료실’에 공지 예정이오며,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(공휴일인 경우 첫 근무일)까지 제출된 반대동의서 및 동의철회서만 유효합니다.
- 후보지 추천결과 미선정지나 후보지 추천 제외지에 대하여는 미선정일이나 제외결정일로부터 1년간 후보지 신청 동의서 발급이 제한됩니다.
-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성동구청 주거정비과 재개발지원팀 (02-2286-6563~6565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